

충청북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 남범우

충청북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옥규 의원 등 8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22년 1월 10일

○ 회부일자 : 2022년 1월 11일

3. 제안이유

○ 법령의 명칭에 대한 약칭을 정의하지 않고 약칭을 사용한 것을 전체법령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인용문구의 띄어쓰기 정정(안 제1조)

– “널 리” → “널리”

○ 약칭 정의(안 제3조)

– “법이 정한 국기게양일” → 「대한민국국기법」(이하 “도”라 한다)이 정한 국기 게양일“

## 5. 검토의견

-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요내용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인용법령 명칭을 정정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붙 임: 충청북도 국기계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